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중국, 동물 전염병 발생으로 한국산 가금류, 돼지, 쇠고기 및 관련 제품에 수입 금지 공고



수입통관

이슈 바로가기 ▶

- 2023년 8월 25일, 중국 해관총서는 동물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 및 그 국가로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 목록을 공고하고, 목록에 포함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공고일부터 시행함
- 주요 내용(한국 발생 동물 전염병 및 수입 금지 적용 품목)

동물 전염병	수입금지 적용 품목
조류인플루엔자(H5N1)	가금류 및 관련 제품
돼지열병	돼지 및 관련 제품
구제역	쇠고기 및 관련 제품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 멧돼지 및 관련 제품

(*) 수입 금지 조치 시행 일정: 2023년 8월 25일(공고일)

출처: 식품법규센터(食品法規中心), 禁止从动物疫病流行国家地区输入的动物及其产品一览表(更新至2023年8月21日), 2023.08.25

중국, 보건식품의 새로운 건강기능 제안과 기술평가를 위한 시행 세칙 발표(2023년 8월 28일 즉시 발효)

- 2023년 8월 28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6월 15일 11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된 「보건식품 신기능 및 제품 기술평가 실시 세칙([2023] 37호)」을 공고하고 즉시 발효함
- 주요 내용
 - 제1장 일반 조항(주요 내용)
 - 신기능을 「건강기능표시를 허용하는 건강기능 목록(允许保健食品声称的保健功能目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출시 전 신기능 연구와 기술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신기능 건강식품에 대한 시판 후 평가도 통과해야 함
 - 신청인이 신기능의 제안과 해당 신기능을 가진 보건식품의 등록신청을 동시에 제안하는 경우, 식품평가센터는 이를 동시에 접수하여 관련 심사를 진행해야 함
 - 제4장 기술평가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안된 신기능은 「건강기능표시를 허용하는 건강기능 목록」에 포함될 수 있음(주요 내용)
 - 질병 예방, 치료, 진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건강 기능으로서의 목적이 명확해야 함
 - 국내외 기능 평가방법에 관한 비교 자료 및 건강기능 평가 테스트 보고서는 건강기능 평가 방법 및 판정 표준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함
 - 신기능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신기능 제안 서류(종이 자료 및 전자문서)
 - 제출 자료에 대한 책임 서약서
 - 제안자의 신분증 사본
 - 시행일: 2023년 8월 28일



SPS

이슈 바로가기 ▶

출처: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 市场监管总局关于公布《保健食品新功能及产品技术评价实施细则(试行)》的公告, 2023.08.28

일본, 주류의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성분에 피틴산칼슘, 황산동 추가



SPS

이슈 바로가기 ▶

- 2023년 7월 26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피틴산칼슘을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식품 첨가물로 신규 등록함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일본 국세청은 2023년 8월 28일, 「주세법 및 주류행정 관계법령 등 해석통달」을 수정하여, 일반적으로 주류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포도를 주원료로 한 과실주 및 감미 과실주 제조 공정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정첨가물의 목록을 개정함
- 주요 내용(개정 내용)
 - 목록에 추가되는 대상 품목: 피틴산칼슘, 황산동
 - 대상 품목의 사용 규정
 - 피틴산칼슘: 포도주에 한해 1L 당 0.08g 이하로만 사용 가능
 - 황산동: 포도주 1L 당 10mg 이하로만 사용 가능하며, 1L 당 2mg 이하로 잔존하여야 함

출처: NTA, 酒税法及び酒類行政関係法令等解釈通達の一部改正について(法令解釈通達), 2023.08.28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호주, 동물성 원료 및 식품의 표준 수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공고 발표

- 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수입 허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특정 상품과 관련된 생물 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한, 동물성 원료 및 동물성 식품의 '표준 수입 허가(standard import permits)'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함
- 주요 내용
 - 대상 품목(표준 수입 허가대상 품목 전체) 및 예외 품목(허가 기간 연장 제외 대상)
 - 대상 품목(식품 품목만 표기): 일본산 신선 쇠고기(냉동/냉장), 구제역 청정 국가의 버터와 치즈*, 콜라겐 케이싱을 포함한 콜라겐, 익힌 돼지고기*, 양식 어류*, 샘플 식품,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 익히지 않은 냉동 통새우, 부분적으로 껍질을 벗긴 냉동 새우 또는 고도로 가공된 새우
 - (*) 표시는 예외대상 품목과 연관성이 있는 품목임
 - 예외 품목: 레토르트 식품(retorted food)*, 계란 10% 이상/유제품 10% 미만의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 양식 어류
 - (*) 장기 보관을 위해 살균하여 별도 포장한 식품
 - 주요 변경 사항
 - 표준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기존 표준 허가를 받은 식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존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음
 - 적용 날짜: 2023년 8월 18일 이후에 제출되는 신청서부터 적용



수입통관

이슈 바로가기 ▶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171-2023: Increase to the length of validity of standard import permits issued by Biosecurity Animal Division, 2023.08.18

인도, 알코올음료의 일부 제품 규정과 영양정보 표시 기준을 변경한 식품 안전 및 기준 개정안 발표(2024년 3월 1일 발효)



TBT

이슈 바로가기 ▶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2018년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 규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2023년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 1차 개정 규정」을 2023년 8월 21일 관보에 고시함
- 주요 내용(개정 내용)
 - Part2의 싱글 몰트 및 그레인 위스키 규정 변경

기존	변경
(i) 싱글 몰트 위스키는 하나의 특정 맥아 곡물 또는 맥아 보리를 사용하여 발효된 혼합물(mash)에서 얻은 증류액으로, 포트 스틸(pot still)로만 증류하고 단일 양조장에서 생산됨	(i) 싱글 몰트 위스키는 다른 곡물을 첨가하지 않고 맥아 보리를 사용하여 발효된 혼합물(mash)에서 얻은 증류액으로, 포트 스틸(pot still)로만 증류하고 단일 양조장에서 생산됨 <small>(*) 포트 스틸: 소량을 증류시키는 단식증류법</small>
(ia)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또는 블렌디드 그레인 위스키: 블렌디드 몰트 및 그레인 위스키는 보리 몰트 또는 그레인 위스키를 2퍼센트 이상 혼합한 증류주여야 함	(ia) 싱글 그레인 위스키는 맥아 또는 맥아를 첨가하지 않은 곡물을 사용하여 발효된 혼합물(mash)에서 얻어 양조장에서 생산된 증류액으로, 싱글 몰트 위스키와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블렌디드 그레인 위스키를 포함하지 않음

- Part5의 5.5 알코올음료 라벨링 규정 변경

기존	변경
알코올음료는 라벨에 영양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코올음료의 라벨에는 칼로리(kcal)로 표시된 에너지 함량을 제외하고 어떠한 영양 정보도 표시해서는 안됨 에너지 함량과 관련된 표시는 자율적으로 함

(*) 발효일: 2024년 3월 1일

출처: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 No. STD/SP-21/T(Alcohol-4), 2023.08.21